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의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붕의 성능기준 마련(안 제3조)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24조)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내화구조 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틀”을 “벽·기둥·보·바닥·지붕틀 또는 지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를 “건축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붕내화구조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붕내화구조 인정서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지붕 내화구조의 시험성적서는 제13조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u>벽·기</u> <u>동·보·바닥 또는 지붕</u>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 라 화재시의 가열에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 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 다.</p> <p>제8조 (품질시험) ①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em;">② 신청자는 내화구조 품질시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다음 각호</u> <u>의 시험기관</u>에서 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 의 장은 시험체 제작·시험일정 및 과정, 시험결과를 기록관리 하고, 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u>다</u> <u>만,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u>에서 <u>품질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u> <u>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의</u> <u>입회하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u> <u>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u></p> <p>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p>	<p>제3조 (성능기준) ----- <u>벽·기</u> <u>동·보·바닥·지붕</u> 또는 <u>지</u> <u>붕</u> ----- ----- ----- ----- ----- ----- ----- ----- ----- ----- -----</p> <p>제8조 (품질시험) ① (현행과 같 음)</p> <p style="padding-left: 2em;">② ----- ----- <u>건축법시행</u> <u>령 제63조에 따라 지정된</u> ----- ----- ----- ----- ----- ----- -----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단</p> <p style="text-align: left;">서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에 따른 시험기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 ⑤ (생략)

<신설>

제24조 (생략)

<삭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
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
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
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